

투자신탁 약관변경 및 해지 공고

1. 투자신탁의 약관변경

- ① 대상투자신탁 : 한바구니CH중기공사채투자신탁(C-1)호, BEST신종MMFH-1호, BEST옵티맥스중기채권투자신탁III(H-1)호, BEST 클로버 High-Yield 투자신탁(C1) <총 4건>
- ② 약관변경일 : 2012년 11월 14일
- ③ 변경내용

관련조항	변경전	변경후
제26조 제(①)/②)항	<중략> <u>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(10억/50억/100억)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(금감위/재정경제원장관)에 신고하고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u>	<중략> <u>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u>
제26조 제(②)/③/④)항	(제1항또는제2항/제1항)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(<u>판매회사/ 판매회사 또는 위탁회사</u>)는 <중략>	(제1항또는제2항/제1항)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<u>위탁회사</u> 는 <중략>

*괄호안 내용은 개별 투자신탁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

2. 소규모 투자신탁의 해지

- ① 해지사유(근거법) 및 대상 투자신탁
 - 『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조항』 : 1. 투자신탁 약관변경 대상 투자신탁과 동일 <총4건>
 -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』 : 신한BNPP봉주르인터내셔널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-재간접형], 신한BNPPBEST신종개인용단기금융투자신탁A-3호, 신한BNPP탑스글로벌밸런스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], 신한BNPPTops글로벌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-재간접형], 신한BNPPTops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<총5건>
- ② 투자신탁 해지일자 및 상환금 지급방법

2012년 12월 14일 투자신탁 해지 후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됨
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익자총회 관련 취소 공고

지난 2012년 11월 6일 공고한 신한 BNPP 증권 투자신탁 제 HP-3 호[ELS-파생형]의 기준일 및 수익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는 해당 수익자 총회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